

DAO와 소송, DAO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한서희 변호사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서 DAO의 법적 성격 및 DAO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함

<Sarcuni et al v. bZx DAO et al>

○ 사건 경위

2022. 5. 2. 14명의 여러 국가 국적을 보유한 원고들이 bZx DAO와 bZx DAO의 공동 설립자인 2개 유한회사(DAO의 투자자이자 거버넌스 결정에 관여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주장 내용

DAO 운영자들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영자들은 폴리곤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과실책임이 존재한다는 것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n v. Ooki DAO >

○ 사건 경위

-bZeroX LLC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bZx Protocol을 운영

-이들은 CFTC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마진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

- 무허가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거래소법상 이행해야하는 고객 확인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
- bZeroX LLC는 그 지배권을 the bZx DAO로 이전했고 그 이름도 Ooki DAO로 변경함
- CFTC는 Ooki DAO가 법인격 없는 조직체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거래소법에 위반되었다고 보아 소를 제기함.
- Ooki DAO는 담보대출 및 마진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 (<https://blog.ooki.com/liquidity-staking-and-ooki/>)

- 쟁점

- CFTC는 Ooki DAO의 구성원을 피고로 보았음
- 이때 구성원은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토큰 홀더를 의미하고, 따라서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토큰보유자 모두를 참여자 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고 책임을 추궁한 것임

- CFTC의 주장에 대한 반론

- Summer K. Mersinger 위원 : 다오 구성원이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책임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전한 web3.0 거버넌스의 형성을 저해하게 되고, 단순히 투표를 했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DAO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반면 토큰을 보유하기만 하고 투표는 하지 않은 다른 이용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함
- 2022. 10. 3. LexPunk라는 단체가 제출한 의견: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

- 또한 Ooki DAO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Ooki 구성원과 "불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 LeXpunK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에 대해 대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과의 조약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 법원의 2022. 12. 20.자 결정 : DAO 토큰 보유자에 대한 피고적격 인정

- DAO가 수행한 업무는 LLC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음
- 과거 LLC가 수행하던 키 관리 업무를 DAO에게 이전했고 이 키는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결정되었으며 토큰 보유자들은 프로토콜의 어떠한 변화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할수 있었음
- 특히 CFTC가 특정 기술을 대상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조직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며, 반드시 CEA의 수범자 중 “사람”이 있으므로 2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비정형적인 조직에 대한 소제기도 가능함
- CFTC는 “두사람 이상의 집단”이라는 점을 입증했음
- 토큰 보유자들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집단을 결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bZeroX LLC의 창시자들은 Ooki DAO를 만들고 그 재단의 자산과 함께 통제권을 모두 토큰 보유자들에게 넘겼는데 토큰 보유자들이 이러한 권리와 권한의 이전에 아무런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투표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호간에 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THE DAO 사례와 비교

- SEC는 The DAO 사례에서 토큰 보유자의 투표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DAO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함
- 반면 Ooki DAO 사례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한 점만을 근거로 CEA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음

- 과연 투표권을 보유한 자가 투표를 한 것 만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DAO의 토큰 분배 및 집중도에 따라서 실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Ooki DAO에서 조직체의 법적 성격은?

- OokiDAO 사례에서는 결국 DAO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투표권 행사자를 조합원으로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The DAO 사례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조직체로 따질 때 DAO의 법적 성격을 익명조합으로 보고 DAO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가 표창되어 있는 증표를 증권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구조상, 발행자의 법적지위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즉, 발행자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이 발행한 권리증서는 증권에 해당할 수 없음(투자자간 동업계약서에 불과함)

- 생각해볼 점

- 미국의 위 소송들을 통해서 DAO와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DAO의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음
- 집단 소송에서는 DAO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DAO의 주된 의사결정자 및 주요 투자자로 보고 있음(토큰 보유량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
- CFTC에서는 토큰 보유량을 따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토큰보유자를 DAO 구성원으로 보고 있음.
- CFTC와 같이 본다면, 실제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 투표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DAO 운영에 참가할 정도의 토큰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의 토큰 보유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음
- Ooki DAO가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디파이 스테이킹 이

율 등도 투표로 결정될 수 있음) 과연 디파이 참여자들이 투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프로토콜 운영자로서의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임